

사단법인 한국 부식 학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부식학회 정관 제38조에 의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2 조 (입회)

본 학회의 정(학생)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원서에 입회금 및 당해년 회비를 첨부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조 (회비)

각종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1,000
2. 회비(년액)
 - 1) 정회원 ₩5,000
 - 2) 학생회원 ₩2,500
 - 3) 단체회원 ₩50,000이상
 - 4) 특별회원 ₩200,000이상

단,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종신회원

당해년도 정회원 년회비 10년분을 일시 납입하는 회원은 회비를 종신토록 면제한다.

제 4 조 (기납 금품의 불반환)

회원은 일단 납입한 입회금, 회비 및 기타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 5 조 (권리 의무)

회원은 규칙 제 3조에 정한 회비를 매사업년도 1/4분기 이내에(정, 학생회원은 3/4분기이내) 납입하여야 하며, 회원의 연락 주소지의 변경시 반드시 본회에 통보함으로서 정관 및 제반 규정에 정한 권리를 갖는다.

제 6 조 (자격의 정지)

회비를 체납한자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상기의 사유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정지된 자가 체납 회비를 납부할 때에는, 회장의 승인을 거쳐 재입회를 승인할 수 있다.

제 7 조 (명예 회원의 추천)

정관 제10조 5항에 정하는 명예회원은 정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되,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를 결정한다. 명예 회장 및 고문의 선출도 이에 준한다.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원의 명칭 및 정수)

임원의 직무별 명칭 및 정수는 다음과 같다. (정관 15인 이내) 1978.6.11 제 4차 이사회에서 개정

- | | |
|---------|----|
| 1. 총무이사 | 1인 |
| 2. 재무이사 | 3인 |
| 3. 사업이사 | 3인 |
| 4. 기술이사 | 3인 |
| 5. 편집이사 | 3인 |
| 6. 감 사 | 2인 |

제 9 조 (임원의 선출)

임원(이사 및 감사)의 선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임원후보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2. 임원은 이사회가 제출한 후보자 중에서 총회 의결에 의하여 임원은 선출된다.

제10조 (선거, 피선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하여 부여된다.

제 4 장 회 무

제11조 (회무의 분장)

본회의 회무는 다음과 같이 이사가 분장 수행한다.

1. 총무이사 : 인사, 문서, 기타 서무일반에 관한 업무
2. 재무이사 : 예산, 결산, 금전의 출납, 재산의 관리 및 기타 회계에 관한 업무.
3. 사업이사 : 학술 발표회, 세미나, 강습회, 견학회, 좌담회등 행사의 기획 및 개최에 관한 업무.
4. 기술이사 : 조사, 연구, 교육 및 대외 용역에 관한 업무.
5. 편집이사 :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수 발간에 관한 업무.

제12조(사무국)

본회는 원활한 회무 수행과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약간명의 직원을 둘수 있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 정원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14조(이사회회 개최)

이사회회는 2개월에 1회씩 정기 개최하며 회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결석 이사의 출석)

이사회에 결석하는 이사는 출석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때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 6 장 위 원 회

제16조(위원회의 설치)

1. 회장은 회무 수행상 필요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은 회장이 이를 위촉하며 설치 위원회의 세부적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17조(위원회의 직무)

설치 위원회는 매회기마다 또는 그 임무 종료시 사업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지 부 및 분 회

제18조(지부 설치)

정회원 30인 이상인 지역에 이사회회의 의결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단, 학생회원 2인을 정회원 1인으로 간주한다.

제19조(지부 임원)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 | |
|----------|-----|
| 1. 지 부 장 | 1인 |
| 2. 부지부장 | 1인 |
| 3. 지부이사 | 약간명 |
| 4. 감 사 | 1인 |

제20조(임원선출)

지부 임원은 지부 규칙에 따라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지부장은 지부의 추천을 거쳐 본회 회장이 임명한다.

제21조(임원 임기)

지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의무)

1. 지부는 본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2. 지부가 본회의 사업 또는 명예에 관련된 내외 활동을 할 때에는 사전에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회무보고)

지부는 대사업년도 예산, 결산 및 회무보고서 회원명단, (회비납부현황)를 정기총회 20일전 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경비의 보조)

본회는 지부 회원의 년회비의 1/3을 지부 경비로 보조한다.

제25조(규칙의 제정)

본 규칙에 규정한 사항외에 지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부 규칙으로 정한다. 단, 지부규칙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분회의 설치)

동일한 직장 또는 단체에 속하는 정회원 5명 이상으로 분회를 둘수 있다. 단 학생회원 2명은 정회원 1명으로 간주한다.

제27조(분회장)

분회에는 분회장 1인을 두며 회장 또는 지부장이 이를 위촉한다.

분회장은 매년 1월 소속회원명단을 본회 사무국 또는 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회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회 지

제28조(회지간행)

본회는 년 4회 이상 “한국부식학회지”를 발간한다.

제29조(배부)

1. 회지는 회원에게 무상으로 배부한다. 단 비회원으로서 구독을 희망할 때에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제공할 수 있다.
2.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배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9 조 포상 및 장려

제30조(포상)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본회의 학회상으로 포상한다.

- 1) 부식 및 방식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개발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자 또는 단체
- 2)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자 또는 단체

2. 포상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따로 정하는 본학회 학회상 규정에 따른다.

제31조(연구비 지급)

1. 부식, 방식 및 그 응용에 관한 학술 연구를 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연구비를 지급한다.
2. 연구비 지급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0장 부 칙

제32조(규정제정)

본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3조(시행일자)

본 규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